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038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계획중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20년도 공유재산 매각 연기로 예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감액하고, 예금이자 증가로 기금운용수익을 증액하기 위해 기정 수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용산구청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공사 발주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건설비를 감액하고, 금고예치금을 증액하고자 함

〈표 2-1〉 건립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63,370	62,712	△658	계	63,370	62,712	△658
교특회계 전입금	17,229	12,279	△4,950	비용자성 사업비	28,510	4,546	△23,963
예치 회금수	45,558	49,610	4,052	예치금	34,860	58,165	23,305
예금이 수입	582	822	239				

Ⅲ. 검토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633억 7,000만원)보다 △1.0%, △6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률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이 당초보다 △6억 5,800만원 감액 계획되어 지출계획도 변동되는 것으로 수입계획의 경우,
 - ① 강남구 도곡동 토지매각 연기로 **교특회계전입금**이 당초 계획(172억 2,900만원)보다 △28.7%, △49억 5,000만원 감액된 122억 7,900만원으로 감수납 계획하고,

- ② **예치금회수** 항목은 '19회계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당초계획(455억 5,800만원)보다 8.9%, 40억 5,200만원 증액된 496억 1,000만원을 수입계획하였으며
- ③ **예금이자수입**은 당초계획(5억 8,200만원)보다 41.1%, 2억 3,900만원 증액된 8억 2,200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한 것임

〈표 3-1〉 수입계획 세부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장 / 관 / 항 / 목	당 초	변 경	증 감	증 감 률
합 계	63,370	62,712	△658	△1.0
자 체 수 입	582	822	239	41.1
이 자 수 입	582	822	239	41.1
이 자 수 입	582	822	239	41.1
예 금 이 자 수 입	582	822	239	41.1
기 타	45,558	49,610	4,052	8.9
예 치 금 회 수	45,558	49,610	4,052	8.9
예 치 금 회 수	45,558	49,610	4,052	8.9
예 치 금 회 수	45,558	49,610	4,052	8.9
내 부 거 래	17,229	12,279	△4,950	△28.7
전 입 금	17,229	12,279	△4,950	△28.7
전 입 금	17,229	12,279	△4,950	△28.7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229	12,279	△4,950	△28.7

- 수입계획의 변동에 따라 지출계획도 △6억 5,800만원 감액하여 변경이 필요한 바, ① 정책사업인 **기관운영관리**의 지출액을 당초 계획(285억 1,000만원)보다 △84.1%, △239억 6,300만원 감액하고, ② 정책사업인 **예비비 및 기타**의 지출계획을 당초 계획(348억 6,000만원)보다 66.9%, 233억 500만원 증액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기금 운용계획중 지출계획의 세부 변경 내역을 검토하면,

- ① **비용자성 사업**의 경우, 서울시 경관심의 및 용산구청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일시중지('19. 8. 3~'20. 8.18)됨에 따라 공사 발주 일정이 조정되어 시설비·감리비는 감액하고,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는 증액하여 지출계획한 바,
 - 시설비는 당초 사업비 264억 7,200만원보다 △241억 4,400만원 감액한 2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 감리비는 당초 사업비 19억 6,900만원보다 △16억 2,000만원을 감액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설계비는 당초 사업비 1,900만원보다 15억 9,800만원을 증액한 1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시설부대비는 당초 사업비 5,000만원보다 2억 200만원 증액한 2억 5,200 만원을 편성한 것임
- ② **예치금**의 경우, 당초계획(348억 6,000만원)보다 66.9%, 233억 500만원 증액된 581억 6,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표 3-2〉 지출계획 세부 변경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사업내역	당 초	변 경	증 감	증 감 륜
합 계	63,370	62,712	△658	△1.0
기 관 운 영 관 리				
교육 행정 기관 시설				
본청시설관리(신청사건립)	28,510	4,546	△23,963	△84.1
설 계 비	19	1,618	1,598	8,410.5
시 설 비	26,472	2,327	△24,144	△91.2
감 리 비	1,969	348	△1,620	△82.3
시 설 부 대 비	50	252	202	404.0
예 비 비 및 기 타				
예 비 비 및 기 타				
내 부 유 보 금				
예 치 금	34,860	58,165	23,305	66.9

○ 기금은 한정된 기간동안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안정된 재원확보와 재원의 유동적 운용을 특징으로 하는 바, 기금의 지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이월된 이후 예치금으로 적립시키는 소극적 운용보다는 회계연도중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단 1원의 이자수입이라도 확보하는 재원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